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령 제명 약칭법안 검 토 보 고

〈법령 제명의 약칭에 관한 사항 규율〉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60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가. 법령 제명의 약칭 대상(안 제2조)	5
나. 법령 제명의 약칭 방법 및 사용(안 제4조 및 제5조)	7
3.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0명
2. 제 안 일 : 2025. 1. 31.
3. 회 부 일 : 2025.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음.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

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제명의 약칭을 하도록 하되, 법령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법령 제명의 약칭은 대표적인 단어 위주로 정하되 다른 법령과 혼동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단어로 정하고, 조사·접속사나 문장부호 등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하는 등 약칭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령 제명의 약칭은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그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두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개별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입법배경

사회적으로 긴 법률명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런데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는 경우 제명만으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4년 법제처는 법률 관련 유관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뿐만 아니라 국어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를 포함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¹⁾하여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 법률의 약칭을 논의하였고,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약칭을 확정하고 국가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권고한 바 있음²⁾.

2015년 이후로 법제처는 법제처훈령인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현행 법률 약칭의 대상 법령 선정 및 대상 법령 약칭화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정보 제명 옆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2022년 3월 법제처는 법제처예규인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1) 2014.2.28. 제정 법제처 훈령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2) 법제처 보도자료, 제각각 법률 약칭, 이제는 하나로, 2014. 10. 8.

제정하여 10음절 이상인 법령의 제명에 대하여 주된 용어로 약칭할 것, 특정 사건명 관련 법령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할 것 등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안이유에 서술된 바와 같이 여전히 국가기관 내에서도 통일적인 법령 제명 약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일반 국민들이 공식적인 약칭을 파악하기에는 정책적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법령 제명의 약칭 대상과 약칭 기준, 약칭 방법 등을 예규나 훈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긴 법령명에 의한 불편함 및 각자 다른 약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언론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서 동일 법령에 대해 자의적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수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오해와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동 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법령마다 별도의 제명 약칭에 관한 조문을 신설³⁾하는 등 입법의 방식을 통하여 약칭 사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이 다른 대체적인 정책적 수단에 비해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4조(법령 제명의 약칭방법) 법령 제명의 약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약칭 기재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둘 것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법령 제명의 약칭 대상(안 제2조)

안 제2조는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 약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법령 제명의 약칭대상) 법령 제명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법령 제명의 약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제명의 약칭으로 인하여 해당 법령의 목적 또는 내용의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법제처예규인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서는 제명이 10음절 이상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약칭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⁴⁾ 제명이 9음절 이상인 것으로 약칭 대상을 정하는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법령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약칭 대상이 되는 법령 제명의 기준으로 음절 외에 “관형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관형구란 명사 앞에서 이를 꾸며 주는 어구를 뜻함.⁵⁾ 예를 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

4) 「법령 제명 약칭 기준(법제처예규)」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5) 관형구 冠形句: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어구. ‘맑고 고운 마음’의 ‘맑고 고운’ 따위이다.
관형어(冠形語):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은 제명은 9음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사법’과 같이 더 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약칭 대상을 ‘법령’으로 하고 있고, 이에는 법률 뿐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칭 기준을 법령 제명의 음절의 개수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경우 총 8음절로 약칭 기준에 미달하나, 이 법의 하위법령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은 각각 11음절, 12음절로 약칭 기준을 넘어서, 법률은 약칭 대상이 아니나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약칭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참고로, 현행 법률 1,681건 중 9음절(10음절) 이상인 법률은 총 65.1% (57.8%)이며, 현행 법령 5,114건 중 9음절(10음절) 이상인 법령은 총 80.1% (73.0%)에 달함.

< 9음절(10음절) 이상인 법령 비중 >

계		9음절 이상	비중	10음절 이상	
법률	1,681	1,095	65.1%	972	57.8%
법령	5,114	4,098	80.1%	3,733	73.0%

주 1. 2025. 6. 14.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현행법령 기준

2.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사 ‘의’가 붙은 말 따위가 있다.

체언 體言: 문장에서 주어 따위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나. 법령 제명의 약칭 방법 및 사용(안 제4조 및 제5조)

안 제4조는 법령 제명의 약칭 방법으로 법령 제명의 우측 괄호 안에 약칭을 기재하도록 할 것과, (법령 제명의 약칭)을 조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조를 신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문서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약칭을 사용하고, 다른 법령 조문에서 약칭을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제 정 안
제4조(법령 제명의 약칭방법) 법령 제명의 약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약칭 기재 외에 별도로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제목의 조를 둘 것
제5조(법령 제명의 약칭 사용 등)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제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안의 방식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의 사례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임. 독일의 경우 법률을 ‘법률명, 약칭, 제정일, 개정연혁, 주석’ 등의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하고 있어 약칭을 법률의 형식적 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률명을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로 규정하면서 제명 옆에 괄호로 “집회법 Versammlungsgesetz”라는 약칭을 표기하고 있으며, 제명 바로 아래에서 제명 옆에 기재한 약칭에 대한 약칭 “VersammlG”을 규정함⁶⁾.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명, 본칙, 부칙으로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약칭을 법제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⁷⁾

증보방식⁸⁾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해당 법률이 인용되는 경우 사용될 명칭(Popular Name)을 정하는 경우가 있음. 사용될 명칭은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거나, 발의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마음을 끄는 구호를 사용하거나, 범죄 희생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⁹⁾.

개별 법령에서 조문으로 약칭을 명시하는 경우 약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약칭 사용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서는 법령 제명의 약칭을 입법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제1호와 같이 법령 제명의 우측에 괄호를

6) 김남영,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 국회입법조사처, p.18

7) 김남영,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 국회입법조사처, p.17

8) 개정 법률이 기존 법률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방식을 의미

9) 김남영,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 국회입법조사처, p.21

하고 그 안에 법령 제명의 약칭을 기재하여야 한다면 법률의 제명이 괄호 안의 약칭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장사법’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법률의 제명 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로 개정되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간 공식 제명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로 한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조문에서 법령 제명의 약칭도 인용할 수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장사법」의 여러 인용 방식이 혼재되면 오히려 수범자인 국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도 있음.

아울러, 안 제4조제2호와 같이 “(법령 제명의 약칭)”이라는 조제목의 조를 신설해야 한다면 법령 본문의 어디에 이를 위치시켜야 할지, 해당 조의 내용은 무엇으로 할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조항을 법령마다 신설하는 것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일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이 약칭의 대상을 ‘법령’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약칭을 신설하게 된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각각 제@조(장사법), 제#조(장사법 시행령), 제\$조(장사법 시행규칙) 총 3개 조항을 신설하게 될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 제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약칭보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개정 시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약칭으로 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점(예: 민식이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제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법령”으로 약칭하고, 9음절 미만인 법령 제명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약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제처장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령 제명 약칭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령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다만, 법제처 행정규칙인 「법령 제명 약칭 기준」과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서 법령 제명 약칭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바, 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관련이 적은 기술적 사항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4